

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

의원용

1. 의료기관 대응 개요

1. 증상 및 징후 확인

발열(38도 이상)과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) 또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부전

YES ▼

NO ▶

일상적인 환자 분류 및 평가

2. 노출력 확인

증상 시작 전 14일 이내에
- 중동지역에 여행(체류)하였거나
-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와 접촉하였는가

YES ▼

NO ▶

일상적인 환자 분류 및 평가

3. 환자 격리 및 즉시 신고

-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 착용(N95마스크, 가운, 장갑, 눈 보호장비)
-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
- 욕실 또는 뚜껑이 있는 변기가 있는 1인실 또는 밀폐된 공간에 환자 배치
-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

2. 신고 기준 및 방법

• 신고기준

-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*방문 또는 발열(38도이상) +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 증후군
-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*의 의료기관에 근무한 직원, 내원환자, 방문자 또는 발열(38도이상) + 호흡기 증상 (기침, 호흡곤란)
-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자** 또는 발열(38도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 (기침, 호흡곤란)

* 중동지역 아라비아반도 및 그 인근 국가 (바레인, 이라크, 이란, 이스라엘의 서안과 가자지구, 요르단, 쿠웨이트, 레바논, 오만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시리아, 아랍에미리트, 예멘)

**밀접접촉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(가운, 장갑, N95 마스크, 눈 보호장비 등)를 착용하지 않고
-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
- 같은 방 또는 진료/치료/병실에 머문 경우(가족, 보건의료인 등)
-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

• 신고처 : 관할 보건소

• 신고시기 : 지체없이

• 신고방법

- 관할 보건소로 유선으로 먼저 신고
- 감염병 발생 신고(보고)서 작성 후,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(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) 등의 방법으로 신고

3. 조치사항

의심환자 진료시

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전까지

- 의료진은 N95 마스크, 장갑, 눈 보호장비(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를 착용하고
- 의사환자는 수술용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

중동호흡기증후군이란 ?

•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(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: MERS-CoV)에 의한 호흡기감염증

• 감염경로

-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음
- 단,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,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

• 임상적 특성

- 대부분 환자가 중증급성하기도질환(폐렴)이나 일부는 무증상을 나타내거나 경한 급성상기도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
- 주 증상으로는 발열, 기침, 호흡곤란
- 그 외에도 두통, 오한, 인후통, 콧물, 근육통 뿐만아니라 식욕부진, 오심, 구토, 복통, 설사 등
- 합병증 호흡부전, 패혈성 쇼크, 다발성 장기 부전 등
- *신부전을 동반하는 급성 신부전 동반 사례가 사스 보다 높음
- 기저질환(당뇨, 만성폐질환, 암, 신부전 등)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MERS-CoV 감염이 높고 예후도 불량

• 잠복기 5일 (최소 2일 - 최대 14일)

• 치명률 30% ~ 4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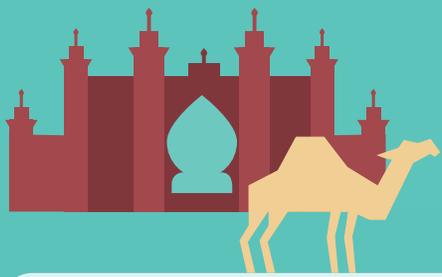
• 예방 백신 및 치료제 없음

의료인 감염 예방 수칙

- 환자 진료 전 · 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
- *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
- 의사환자 등 진료시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, 장갑 및 1회용 가운, 고글(또는 안면부 가리개)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
- 체온계,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
-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
-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

•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

-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
- *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
- 기침, 재채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
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않기
-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
- 발열 및 기침,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, 즉시 병원 방문



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

병원용

1. 의료기관 대응 개요

1. 증상 및 징후 확인

발열(38도 이상)과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) 또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부전

YES ▼

NO

일상적인 환자 분류 및 평가

2. 노출력 확인

증상 시작 전 14일 이내에
- 중동지역에 여행(체류)하였거나
-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와 접촉하였는가

YES ▼

NO

일상적인 환자 분류 및 평가

3. 환자 격리 및 즉시 신고

-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 착용(N95마스크, 가운, 장갑, 눈 보호장비)
-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
- 격리병실에 환자 입원
-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

2. 신고 기준 및 방법

• 신고기준

-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*방문 또는 발열(38도이상) +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 증후군
-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*의 의료기관에 근무한 직원, 내원환자, 방문자 또는 발열(38도이상) + 호흡기 증상 (기침, 호흡곤란)
-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자** 또는 발열(38도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 (기침, 호흡곤란)

* 중동지역 아라비아반도 및 그 인근 국가 (바레인, 이라크, 이란, 이스라엘의 서안과 가자지구, 요르단, 쿠웨이트, 레바논, 오만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시리아, 아랍에미리트, 예멘)

**밀접접촉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(가운, 장갑, N95 마스크, 눈 보호장비 등)를 착용하지 않고
-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
- 같은 방 또는 진료/처치/병실에 머문 경우(가족, 보건의료인 등)
-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

• 신고처 : 관할 보건소

• 신고시기 : 지체없이

• 신고방법

- 관할 보건소로 우선으로 먼저 신고
- 감염병 발생 신고(보고)서 작성 후,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(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) 등의 방법으로 신고

3. 조치사항

격리병실이 있는 병원

-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 착용하고 진료 *N95마스크, 장갑, 보호복(가운), 눈 보호장비
- 환자는 격리병실에 입원
- 환자 검체 채취

격리병실이 없는 병원

-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전까지
- 의료진은 N95 마스크, 장갑, 눈 보호장비 (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를 착용하고
- 의사환자는 수술용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

중동호흡기증후군이란 ?

•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(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: MERS-CoV)에 의한 호흡기감염증

• 감염경로

-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음
- 단,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,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

• 임상적 특성

- 대부분 환자가 중증급성하기도질환(폐렴)이나 일부는 무증상을 나타내거나 경한 급성상기도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
- 주 증상으로는 발열, 기침, 호흡곤란
- 그 외에도 두통, 오한, 인후통, 콧물, 근육통 뿐만아니라 식욕부진, 오심, 구토, 복통, 설사 등
- 합병증 호흡부전, 패혈성 쇼크, 다발성 장기 부전 등
- *신부전을 동반하는 급성 신부전 동반 사례가 사스 보다 높음
- 기저질환(당뇨, 만성폐질환, 암, 신부전 등)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MERS-CoV 감염이 높고 예후도 불량

• 잠복기 5일 (최소 2일 - 최대 14일)

• 치명률 30% ~ 40%

• 예방 백신 및 치료제 없음

의료인 감염 예방 수칙

- 환자 진료 전 · 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
- *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
- 의사환자 등 진료시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, 장갑 및 1회용 가운, 고글(또는 안면부 가리개)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
- 체온계,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
-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
-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

•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

-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
- *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
- 기침, 재채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
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않기
-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
- 발열 및 기침,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, 즉시 병원 방문